

제 안 설 명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경 과

가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나. 제안일자 : 2007년 3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임시회

- 2007년 3월 19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일부 조 명칭을 관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띠어쓰기
 - “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정정
-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관계법률 조 변경
 - 제2조제5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”로 한다. (안 제2조제5호)
 - 제2조제6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”로 한다. (안 제2조제6호)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판)

-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정하고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가 제34조로 제34조(교육기관의 설치)가 제32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 가결”

7. 기 타 의 견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제안설명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에출석 · 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4조”를 “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범위) (생략) 1.~4. (생략) 5. 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(교육장)</u> 6. 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</u> 7. (생략)</p>	<p><u>충청북도의회에 출석 · 답변할 수 있는 공 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 1.~4. (현행과 같음) 5.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34조의 6. 「<u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</u>」 제32조의 7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32조(교육기관의 설치)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(이하 "지역교육청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